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. 7. 14 선고 2019가단16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주식회사 C

변론 종결2020. 6. 23.

판결 선고2020. 7. 14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 B는 940,790원, 피고 주식회사 C은 3,496,63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. 6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2018. 10. 26.부터 2019. 6. 17.까지 각 일부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

2. 인정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)

판사이정현

별지